

정답 및 해설

문 1] 정답 ②

- ㉠ (O) 대판 2008.4.24, 2006도8644
 ㉡ (O) 대판 2002.12.27, 2002도2539
 ㉢ (O)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
 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
 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 (X)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바텐더 형태의 영업장에
 서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한 경우,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
 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는 일반음식점영업 허가
 를 받고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
 된다고 해석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관계 법령의 해
 석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6.28, 2011도15097)
 ㉤ (X)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
 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내용을 종합
 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
 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
 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
 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4.04.30, 2013도15002)

문 2] 정답 ④

- ① (O) 대판 1996.9.6, 95도2551
 ② (O) 대판 2002.5.24, 2000도1731
 ③ (O) 대판 1994.4.26, 93도1731
 ④ (X)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 있는 자
 에 한하고, 조리 또는 사회상규에 의하여 보호의무 있는 자
 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77.1.11, 76도3419).

문 3] 정답 ②

- ① (O) 대판 1990.10.16, 90도1786
 ② (X)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
 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

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
 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

- ③ (O)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 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
 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72.3.28, 72도296).
 ④ (O) 대판 2001.6.1, 99도5086

문 4] 정답 ③

- ① (O) 대판 2002.6.28, 2002도2425
 ② (O) 대판 1995.1.24, 94도1949
 ③ (X)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내의 불미스
 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85.5.28, 85도588).
 ④ (O)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판 2014.04.10, 2012도
 8374).

문 5] 정답 ①

- ① (X)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
 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
 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사
 안에서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9.12.24, 2007도
 6243).
 ② (O) 대판 2011.7.14, 2011도639
 ③ (O) 대판 2011.5.13, 2009도14442
 ④ (O) 대판 2010.3.11, 2009도5008 [14 법행]

문 6] 정답 ②

- ① (O)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② (X)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05.11, 2006도1993). [14 경찰승진]
 ③ (O) 대판 1994.8.26, 94도780
 ④ (O) 형법 제16조

문 7] 정답 ③

- ① (O) 대판 2003.6.13, 2003도1279
 ② (O) 대판 1984.12.11, 84도2524
 ③ (X)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464)
 ④ (O) 대판 2011.1.13, 2010도9330

문 8] 정답 ④

- ① (O) 대판 2003.3.28, 2002도7477
 ② (O) 대판 1997.9.12, 97도1706
 ③ (O) 대판 1995.9.5, 95도577
 ④ (X)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2도1373).

문 9] 정답 ④

- ① (O) 대판 2003.2.28, 2002도7335
 ② (O) 대판 1979.7.10, 79도840
 ③ (O) 대판 1991.9.10, 91도1722
 ④ (X)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09.6.25, 2009도3505).

문 10] 정답 ②

- ① (X)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② (O) 대판 2005.12.9, 2005도7527
 ③ (X)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 ④ (X)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적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2도2345).

문 11] 정답 ①

- ① (X)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2002.10.11, 2002도4315).
 ② (O) 대판 1984.5.15, 84도655
 ③ (O) 대판 1982.6.22, 82도705
 ④ (O)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조치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8.11.8, 88도1580)

문 12] 정답 ②

- ㉠ (X) [1]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2]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 (O) 대판 2004.3.26, 2003도7927
 ㉢ (X) 종종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종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판 1995.10.12, 95도1589).
 ㉣ (O) 대판 2013.11.28, 2013도5117

문 13] 정답 ③

- ① (X) 타인의 주거에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가 되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된다(대판 1995.9.15, 94도2561).
 ② (X)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6.9.14, 2006도2824).
 ③ (O) 대판 2002.9.24, 2002도2243
 ④ (X)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5.8, 2007도11322).

문 14] 정답 ③

- ① (O) 대판 2012.7.12, 2012도1132
 ② (O) 대판 2012.4.26, 2010도11771
 ③ (X)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약 1개월간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7.10, 2008도3252).
 ④ (O) 대판 1996.10.15, 96도2227

문 15] 정답 ④

- ① (X)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② (X)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11.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③ (X) [1]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乙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乙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乙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乙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준강도죄를 적용한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그 자체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준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4.05.16, 2014도2521)
 ④ (O) 대판 1973.11.13, 73도1553 전원합의체

문 16] 정답 ③

- ① (O) 대판 2010.6.10, 2010도1777
 ② (O) 대판 1997.9.9, 97도1561
 ③ (X) [1]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 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0.5.27, 2010도3498).

- ④ (O) 대판 1998.4.14, 98도231

문 17] 정답 ①

- ① (X) [1]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8.4.24, 2008도1408).
 ② (O) 대판 2013.4.26, 2011도6798
 ③ (O) 대판 2012.9.13, 2010도11665
 ④ (O) 대판 1999.9.17, 97도3219

문 18] 정답 ①

- ① (X)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4.11.13, 84도2192)
 ② (O) 대판 2008.11.13, 2006도755
 ③ (O) 대판 2002.4.26, 2001도6903
 ④ (O) 옳음

문 19] 정답 ②

- ① (O) 대판 2006.1.26, 2005도4764
 ② (X)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대판 2001.8.24, 2001도2832)
 ③ (O) 대판 2003.1.10, 2002도3340
 ④ (O) 대판 1998.2.27, 97도2483

문 20] 정답 ④

- ① (O) 대판 2014.01.29, 2013도13937
 ② (O) 대판 2007.10.12, 2005도7112
 ③ (O) 대판 1985.5.14, 83도2050
 ④ (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 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4.12.22, 94도2528)